

(붙임1)

2016년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(안)

2016. 3

준 법 관 리 인

1 현황 및 평가

- 공공부문에 대한 투명성·신뢰성 요구에 부응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당행의 중요 계약을 자문·평가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(2013.10월)하여 운영하고 있음
 -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, 용역,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자문 등(감시·평가·시정권고 포함)을 구하도록 규정
 - 또한 2015.10월「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지침」을 개정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의 업무권한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*
 - *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업무수행시 인지한 부패행위, 제도 및 운영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저촉되는 행위 금지 명시
 - 사업 주관 부서의 협조 하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제시한 의견이 계약과정 및 향후 계획에 반영되는 등 계약의 적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
 - 이에 따라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 항목 중 ‘청렴시민감사관 운영’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
- ⇒ 2016년에도 주요 사업 진행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

<참고> 청렴시민감사관

- **(개념)** 공공기관이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·자문 및 평가를 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부패 통제시스템으로 기관 내부의 감사제도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
- **(역할)** 계약 및 계약이행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·자문·평가 및 시정권고,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제안
- **(업무수행절차)** 세부사업 추진 전 검토서류 등을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제출 → 사업주관 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 사업 점검 → 사업시행 감시·자문·평가 및 의견제시 → 사업시행 과정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 반영 → 준법관리인의 사후점검 및 평가(Feedback)

2 2016년도 운영 방안

(청렴시민감사관 위촉)

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청렴시민감사관 2인을 연임*토록 함

* 「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4조(임기 및 신분보장) ①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
o 김선국 교수(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, 2013~2015년 청렴시민감사관 역임)

o 이정훈 교수(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, 2014~2015년 청렴시민감사관 역임)

(청렴시민감사관의 주요 직무)

대규모 계약업무 관련 의견 제시

o 대상 사업의 범위는 공사, 구매, 용역계약 사업중 계약금액이(예산배정금액) 6억원 이상인 사업

2016년도 공사, 구매, 용역 계약(잠정, 6억원 이상)

계약명	금액(억원)	예정시기	담당부서
시설관리용역	61.0	3/4분기	강남본부
화폐전시실 확장공사	11.7	2/4분기	강릉본부
3층 강당 리모델링 공사	7.4	3/4분기	포항본부
사무공간 리모델링 및 통신설비 교체공사	6.1	3/4분기	목포본부

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제안

(사후관리)

- 청렴시민감사관이 제안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준법관리인이 점검하는 등 **사후관리 강화**
 - 청렴시민감사관의 자문 또는 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준법관리인에게 통보
 - 준법관리인은 각 부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청렴시민감관에게 처리결과를 회신